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. 4. 28 선고 2021가단1080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관태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7.

판 결 선 고 2022. 4. 28.

주 문

1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2020. 11. 1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'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인정 근거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피고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변론절차에서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)

판사 정하경

별지